

## 제9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

### 제9.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기업인이란 상품 무역, 서비스 공급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자연인을 말한다.

출입국 절차란 일시 입국을 허용하는 사증, 허가, 승인이나 그 밖의 문서 또는 전자적 허가를 말한다.

출입국 조치란 외국 국민의 입국과 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일시 입국이란 영구적 거주를 의도하지 않는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이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입국하는 것을 말한다.

### 제9.2조 범위

1. 이 장은 부속서 9-A에 언급된 각 범주에 따라 한쪽 당사국의 기업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 입국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는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민권, 국적, 거주 또는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고용에 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이 자국 국경의 일체성을 보전하고 자국 국경을 통

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 자연인이 자국 영역으로 입국하거나 자국 영역에서 일시 체류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4.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에 대하여 한쪽 당사국 영역으로 입국하기 전에 출입국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5. 이 장은 제1.2조(일반 정의)에 따라 정의된 금융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 제9.3조

#### 일시 입국의 허용

1. 각 당사국은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자국의 약속을 부속서 9-가에 규정하며, 그 약속은 그 당사국이 명시한 기업인의 각 범주에 대하여, 체류 기간을 포함한 입국 및 일시 체류를 위한 조건과 제한을 명시한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기업인이 다음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항에 따른 약속에 규정된 범위에서 그 기업인에게 일시 입국 또는 일시 체류의 연장을 허용한다.

가. 관련 출입국 절차를 위한 허용 당사국의 규정된 신청 절차를 따를 것, 그리고

나. 일시 입국 또는 일시 체류 연장을 위한 모든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것

3. 한쪽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에게 일시 입국을 허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업인이 전문직을 수행하거나 달리 사업 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면허 또는 의무적 행동 규범을 포함한 그 밖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부터 면제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 제9.4조 신청절차

1. 당사국이 출입국 절차를 위한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으로부터 접수한 출입국 절차 또는 그 연장을 위한 완료된 신청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으로부터 출입국 절차를 위한 완료된 신청을 접수한 후, 요청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신청인에게 다음을 통보한다.
  - 가. 신청의 접수 그리고
  - 나. 신청에 대한 결정, 승인되었을 경우 체류 기간 및 그 밖의 조건을 포함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으로부터 출입국 절차를 위한 완료된 신청을 접수한 후, 요청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신청의 상태를 통보하도록 노력한다.
4. 자국 법 및 규정에 따라 출입국 절차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과된 모든 수수료는, 그러한 수수료 자체가 다른 쪽 당사국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부당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이어야 한다.

## 제9.5조 정보의 제공

1. 각 당사국은,
  - 가. 이 장의 운영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 출입국 절차에 대한 설명 자료를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한다.
  - 나. 이 장에 따른 일시 입국에 대한 요건을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이 그러한 요

건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할 설명자료, 관련 양식 및 문서를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그리고 다른 쪽 당사국에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한다.

- 다.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영향을 미치는 출입국 조치를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나호에 따라 공표되거나 달리 공개된 그 정보가 가능한 한 조속히 갱신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 라.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영향을 미치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유지한다.

### 제9.6조

#### 다른 장과의 관계

-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이 장, 그리고 제1장(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16장(일반 규정 및 예외), 제17장(분쟁해결), 제18장(제도적 장치) 및 제19장(최종규정)과 15.2조(공표)부터 15.4조(행정절차)까지를 제외하고, 당사국의 출입국 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에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정의 다른 장 및 그 부속서에 대하여 의무나 약속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제9.7조

#### 분쟁해결

- 1.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일시 입국 허용의 거부에 관하여 제17장(분쟁해결)이 이 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 가. 그 사안이 반복된 관행과 관련되는 경우, 그리고
  - 나. 영향을 받은 기업인들이 그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행정적 구제 절차

를 소진했을 경우

2. 제1항 나호의 목적상, 다른 쪽 당사자가 재심사 또는 불복청구 절차를 포함한 행정적 구제 절차가 개시된 날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안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않았고, 그러한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관련된 자연인이 야기한 지체에 기인하지 않는 경우, 행정적 구제 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부속서 9-가  
구체적 약속

제1절  
한국의 구체적 약속

1. 한국은 이 장 및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자국 영역으로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말레이시아의 기업인에 대하여, 입국 전 적절한 출입국 절차를 취득할 것을 요구한다.

말레이시아의 상용 방문자

2. 말레이시아의 상용 방문자에 대하여, 고용 허가를 취득할 것을 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고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일시 입국이 허용된다. 다만, 그 상용 방문자는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해야 한다.

3. “말레이시아의 상용 방문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말레이시아의 기업인을 말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

- 1) 서비스 판매자로서 서비스 판매를 협상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한국 영역에 입국하는 자
- 2) 상품의 판매를 협상하기 위하여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그러한 협상이 일반 공중에 대한 직접 판매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 3)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피고용인으로서 제5항에 정의된 관리자 또는 임원이고 투자를 설립하기 위하여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나. 제안된 영업 활동을 위한 보수의 일차적 소득원, 주된 영업소 및 실제 이윤 발생 장소가 적어도 대부분 한국 밖에 있는 자

## 말레이시아의 기업 내 전근자

4. 말레이시아의 기업 내 전근자는 3년까지의 기간 동안 일시 입국이 허용되며, 그러한 일시 입국의 근거가 된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이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사람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해야 한다.

5. “기업 내 전근자”란 한국 영역에 설립된 자회사, 지점 또는 지정된 계열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피고용인으로서, 일시 입국의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렇게 고용되어 있었으며,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원”이란 주로 조직의 경영을 지휘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넓은 재량을 행사하며, 그 회사의 고위급 임원, 이사회 또는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휘를 받는 조직 내의 기업인을 말한다. 임원은 그 조직의 실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임무는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

나. “관리자”란 주로 조직 또는 그 조직의 부서를 지휘하고, 다른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며, 채용 및 해고 권한이나 채용, 해고 또는 다른 인사 조치를 권고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일상적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조직 내의 기업인을 말한다. 이는 감독을 받는 피고용인이 전문직이 아닌 한 제일선의 감독자는 포함하지 않으며,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피고용인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 “전문가”란 지속적인 전문성을 지닌 고급 지식과 조직의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또는 경영에 대하여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하는 조직 내의 기업인을 말한다.

## 말레이시아의 계약서비스 공급자

6. 부록 9-가-1에 규정된 직업의 계약서비스 공급자로서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말레이시아의 기업인은 최대 1년 또는 계약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의 일시 입국이 허용된다.

다만, 그러한 사람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해야 한다.

7. “말레이시아의 계약서비스 공급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말레이시아의 기업인을 말한다.

가. 전문적 지식의 이론적 및 실질적 적용을 요구하는 전문화된 직업에 고용되어 있거나 그러한 직업에 종사할 것

나. 한국의 법, 규정 또는 요건에 따라 제공될 서비스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 및 직업적 자격요건과 직업적 자격이 있고 능력에 기반한 경험을 보유할 것

다. 한국에 상업적 주재를 두지 않는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계약된 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한편, 그 기업은 공급되는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한국의 기업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서비스 계약을 취득하였을 것. 그 계약은 한국의 법과 규정에 합치한다.

라.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 기업의 피고용인이었을 것, 그리고

마. 한국 소재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을 것이 요구될 것

8.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일시 입국의 조건으로 노동시장 테스트가 요구되거나,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일시 입국과 관련한 수량제한이 부과될 수 있다.



부록 9-가-1  
계약서비스 공급자 목록

1. 건설 및 발전 장비를 제외한 산업 장비 또는 기계류의 설치, 관리 또는 수리와 관련된 서비스로서,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기업인을 고용하는 기업으로부터 그 장비 또는 그 기계류를 구입하는 한국 내 기업에 대한 것
2. 정보기술, 전자상거래, 생명 공학, 나노 기술, 디지털 전자 공학 또는 환경 산업에 적용되는 자연과학에 관한 기술적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
3. 회원 계약을 통하여 한국 회계 법인 또는 사무소에 대하여, 외국 회계 기준 및 감사에 대한 자문 서비스, 공인회계사 연수, 감사기법전수, 그리고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 것
4. 한국 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와의 공동 계약 형태로의 공동 작업을 조건으로 하는 건축 서비스
5. 경영 컨설팅 서비스, 그리고
6. 다음의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
  - 가. 컴퓨터 하드웨어의 설치 관련 자문 서비스
  - 나. 소프트웨어 연구 및 개발에 기초한 이행 서비스
  - 다. 데이터 관리 서비스
  - 라. 데이터 시스템 서비스, 그리고
  - 마. 자동차에 대한 특수 엔지니어링 디자인 서비스

## 제2절 말레이시아의 구체적 약속

### 주해

1. 다음은 이 장에 따라 기업인이 말레이시아 영역으로 일시 입국하는 것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구체적 약속을 규정한다.
2. 이 장 및 이 양허표에 따라 말레이시아 영역으로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당사국의 기업인은 입국 전에 필요한 사증과 서류를 구비하고, 그러한 신청을 뒷받침하는 필수 정보와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된다. 입국은 말레이시아의 이민법과 규정에 따라 규정된 조건 또는 제한을 조건으로 부여된다.
3. 당사국의 기업인의 말레이시아 영역으로의 일시 입국과 관련하여 이 장에 따른 말레이시아의 약속은 아래 제1관의 양허표에 규정된 사람의 범주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4. 제9.3조에 따라, 아래의 양허에 규정된 각각의 기업인의 범주에 대하여, 말레이시아는 그러한 기업인의 말레이시아 영역으로의 일시 입국에 적용하는 조건, 제한 또는 자격요건을 명시한다.
5. 이 부속서의 제1절(한국의 구체적 약속)은 이 장 또는 이 협정의 다른 장들에 따른 말레이시아의 약속 또는 의무를 해석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제1관  
금융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

범주의 내용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 포함)
<b>가) 상용 방문자</b>	
<p>상용 방문자란 다음을 의미한다.</p> <p>가.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판매 협상을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영역으로 일시 입국을 하려 하는 그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판매자 또는 대표로서 일반 공중에 대한 직접 판매에 종사하거나 서비스 공급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지 않을 사람</p> <p>나. 판매 또는 일반 공중에 대한 직접 판매가 수반되지 않는 유통 또는 소매 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 영역으로 일시 입국을 하려 하는 상품 판매자, 또는</p> <p>다. 회의나 컨퍼런스에 참석하거나 사업 관계자와의 협의에 참여하는 사람</p>	<p>일시 입국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허용됨.</p> <p>말레이시아 내에 소재한 소득원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아야 함.</p>
<b>나) 기업 내 전근자</b>	
<p>법률 서비스, 세관 대리인 및 부동산 중개인을 제외한 모든 분야 및 하위 분야의 기업 내 전근자</p>	

범주의 내용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 포함)
<p>“기업 내 전근자”란 다음과 같은 기업인을 말한다.</p> <p>가. 말레이시아 내 조직에 속한 고위 관리자인 기업인으로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그 기업의 재산권적 정보를 보유함.</li> <li>2) 그 기업의 설립, 통제 및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 넓은 재량을 행사함.</li> <li>3) 그 기업의 경영을 주로 지휘함. 그리고</li> <li>4) 그 기업의 이사회 또는 파트너로부터 일반적인 감독이나 지휘만 받음.</li> </ol> <p>나. 지속적인 전문성을 지닌 고급 지식과 그 조직의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한 그 기업 내 전문가 또는 전문인인 사람. 다만,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의 피고용인으로서 일시 입국의 신청일 직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되었던 사람.</p>	<p>일시 입국은 최초 2년까지의 기간 동안 허용되고 2년마다 연장될 수 있음.</p> <p>일시 입국은 기업당 한 명의 고위 관리자에게 허용됨.</p> <p>일시 입국은 기업당 두 명의 전문가 또는 전문인에게 허용됨. 추가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인은 관련 서비스 분야 또는 하위분야에서의 시장 테스트 및 수용 가능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말레이시아인에 대한 훈련을 조건으로 일시 입국이 허용될 수 있음. 다만, 그러한 추가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인은 취업 허가의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의 피고용인으로 고용되었으며 최소한 유사한 업무에 근무할 것임.</p>
<p>다) 설치사 또는 정비사</p>	

범주의 내용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 포함)
<p>“설치사 또는 정비사” 는 기계류 또는 장비의 설치사 또는 정비사로 공급 회사에 의하여 고용되거나 임명된 사람이며, 그 공급 회사에 의한 그러한 설치 또는 정비는 그 해당 기계류 또는 장비를 구매하는 조건임. 그리고 계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설치 또는 정비 행위와 무관한 행위는 수행하지 않음.</p>	<p>일시 입국은 3개월 또는 계약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허용됨.</p>